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63,439,810	226,903,194
일반회계		6,821,032,635	204,630,979
특별회계		742,407,175	22,272,215
	기타특별회계	742,407,175	22,272,215
	소방특별회계	329,896,695	9,896,9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2,283,897	10,868,517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3,838,833	415, 16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57,240	46,71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9,420	24,583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2,315,583	969,467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695,507	50,865

-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음.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221,896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6,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